

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제

응시분야 :

응시번호 :

성명 :

【문 1】 甲은 乙을 강간한 후에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. 담당경찰관 A는 퇴근길에 우연히 甲을 발견하고 긴급체포 후 10시간이 지나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. 甲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자 담당경찰관 A는 甲의 동의를 받은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甲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.

A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甲을 추궁하였고, 이에 甲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으며,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법경찰관 A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하였다.

- (1) 甲의 주거지에 대한 담당경찰관 A의 수색은 적법한가? (10점)
(단, 긴급체포의 요건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고 다른 절차상 하자는 없음)
- (2)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허용여부 및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라. (15점)
- (3) 甲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? (10점)
- (4) 검사결과를 근거로 취득한 자백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A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? (15점)

【문 2】 수사상 압수물 환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25점)

【문 3】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25점)